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2015. 3**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1. 주민의견수렴

## 1.1 주민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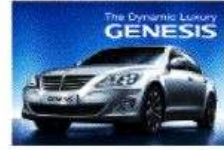
○ 주민의견 수렴기관

구 분	기 관 명
주관기관	광명시
관계기관	부천시,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한강유역환경청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시, 경기도

○ 공람공고 및 설명회 관련사항

###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고 일 시 : 2013년 3월 26일</li> <li>○ 공 고 : 광명시 공고 2013-475호</li> <li>○ 공 고 내 용 : 신문공고 내용참조</li> <li>○ 공고 일간지 : 문화일보, 중부일보</li> </ul>																								
주 민 공 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램 내 용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li> <li>○ 공 램 기 간 : 2013년 3월 26일 ~ 2013년 6월 5일</li> <li>○ 공 램 장 소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외 3개소, 부천시청 환경정책과 외 10개소, 구로구청 환경과 외 2개소, 양천구청 맑은환경과 외 2개소, 강서구청 환경과 외 5개소</li> </ul>																								
주민설명회 개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일 시</th> <th>장 소</th> <th>참석인원</th> </tr> </thead> <tbody> <tr> <td>광명시</td> <td>2013.04.12(금) 오전 10시</td> <td>학운동 주민센터</td> <td>약 60명</td> </tr> <tr> <td>부천시</td> <td>2013.04.18(목) 오후 15시</td> <td>부천시청 소통마당</td> <td>약 90명</td> </tr> <tr> <td>구로구</td> <td>2013.04.15(월) 오후 14시</td> <td>목양교회(구로구 향동 13-1)</td> <td>약 35명</td> </tr> <tr> <td>양천구</td> <td>2013.04.17(수) 오후 14시</td> <td>신정3동 현장민원실</td> <td>약 50명</td> </tr> <tr> <td>강서구</td> <td>2013.04.19(금) 오후 14시</td> <td>방화 3동 주민센터</td> <td>약 70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광명시	2013.04.12(금) 오전 10시	학운동 주민센터	약 60명	부천시	2013.04.18(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통마당	약 90명	구로구	2013.04.15(월) 오후 14시	목양교회(구로구 향동 13-1)	약 35명	양천구	2013.04.17(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장민원실	약 50명	강서구	2013.04.19(금) 오후 14시	방화 3동 주민센터	약 70명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광명시	2013.04.12(금) 오전 10시	학운동 주민센터	약 60명																						
부천시	2013.04.18(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통마당	약 90명																						
구로구	2013.04.15(월) 오후 14시	목양교회(구로구 향동 13-1)	약 35명																						
양천구	2013.04.17(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장민원실	약 50명																						
강서구	2013.04.19(금) 오후 14시	방화 3동 주민센터	약 70명																						



공명시 공고 제2013-475호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 광 명 시 장

#### 1. 사업개요

- 매사 업 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배 위 치 : -시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연결)  
-종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연결)
- 매사업규모 : L=20,200km(왕복4~6차로)
- 매사 업 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매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공사), 30년(운영)

#### 2. 공람기간 및 장소

- 매 공람기간 : 2013년 3월 26일(화)~2013년 6월 5일(수) (60일)
- 매 공람장소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광명6동·7동·학은동 주민센터, 부천시청 환경정책과·도로과, 원미구·소사구·오정구 환경위생과, 역곡1동·3동·준의동·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주민센터, 구로구청 환경과, 오류2동·수궁동 주민센터, 양천구청 맑은환경과, 신정3동·신월3동 주민센터, 강서구청 환경과, 발산1동·공향동·방화1동·2동·3동 주민센터

####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광명시	2013년 4월 12일(금) 오전 10시	학은동 주민센터
부천시	2013년 4월 18일(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풍마당
구로구	2013년 4월 15일(화) 오후 14시	독양교회(구로구 황동 13-1)
양천구	2013년 4월 17일(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장민관실
강서구	2013년 4월 19일(금) 오후 14시	방화 3동 주민센터

#### 4. 주민의견 제출

- 매 제출기간 : 2013년 6월 14일 18:00까지(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매 제출내용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관한 의견

#### 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광명시([www.gm.go.kr](http://www.gm.go.kr)), 부천시([www.bucheon.go.kr](http://www.bucheon.go.kr)), 구로구([www.guro.go.kr](http://www.guro.go.kr)), 양천구([www.yangcheon.go.kr](http://www.yangcheon.go.kr)), 강서구([www.gangseo.seoul.kr](http://www.gangseo.seoul.kr))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환경관리과(☎02-2680-2288), 부천시청 환경정책과(☎032-625-3167), 구로구청 환경과(☎02-860-2413), 양천구청 맑은환경과(☎02-2620-3457), 강서구청 환경과(☎02-2600-4022)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031-426-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일보



刊載料

JOONGBOO.COM

제6642호 2013년 3월 26일



광명시 공고 제2013-475호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26일

### 광 명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나. 위치 : - 시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연결)  
- 종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연결)
- 다. 사업규모 : L=20.200km(왕복4~6차로)
- 라. 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마.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공사), 30년(운영)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3.03.26(화) ~ 2013.06.05(수) (60일)
- 나. 공람장소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광명6동·7동·학은동 주민센터, 부천시청 환경정책과·도로과, 원마구·소사구·오정구 환경위생과, 역곡1동·3동·춘의동·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주민센터, 구로구청 환경과, 오류2동·수궁동 주민센터, 양천구청 맑은환경과, 신정3동·신월3동 주민센터, 강서구청 환경과, 발산1동·공향동·방화1동·2동·3동 주민센터

#### 3.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일시	장소
광명시	2013.04.12(금) 오전 10시	학은동 주민센터
부천시	2013.04.18(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동마당
구로구	2013.04.15(월) 오후 14시	목양교회(구로구 향동 13-1)
양천구	2013.04.17(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장민원실
강서구	2013.04.19(금) 오후 14시	방화3동 주민센터

####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간 : 2013.06.14. 18:00까지(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다. 제출내용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관한 의견

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광명시([www.gm.go.kr](http://www.gm.go.kr)), 부천시([www.bucheon.go.kr](http://www.bucheon.go.kr)), 구로구([www.guro.go.kr](http://www.guro.go.kr)), 양천구([www.yangcheon.go.kr](http://www.yangcheon.go.kr)), 강서구([www.gangseo.seoul.kr](http://www.gangseo.seoul.kr))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환경관리과(02-2680-2288), 부천시청 환경정책과(032-625-3167), 구로구청 환경과(02-860-2413), 양천구청 맑은환경과(02-2620-3457), 강서구청 환경과(02-2600-4022)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031-426-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게 되어 그 사유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동아일보, 인천일보】

### (1)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지 역	개최일시	장소	생략사유
광명시	2013.04.12(금) 오전 10시	학은동 주민센터	정상개최
부천시	2013.04.18(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통마당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일부 참석주민에 한해 별도 설명진행)
구로구	2013.04.15(월) 오후 14시	목양교회	정상개최
양천구	2013.04.17(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장민원실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양천구청 요청으로 5월 29일 추가설명회 개최)
강서구	2013.04.19(금) 오후 14시	방화3동 주민센터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 (2) 주민설명회 대체방법

- 광명시([www.gm.go.kr](http://www.gm.go.kr)), 부천시([www.bucheon.go.kr](http://www.bucheon.go.kr)), 구로구([www.guro.go.kr](http://www.guro.go.kr)), 양천구([www.yangcheon.go.kr](http://www.yangcheon.go.kr)), 강서구([www.gangseo.seoul.kr](http://www.gangseo.seoul.kr))의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http://www.eiass.go.kr))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관련자료를 게시토록 함
-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사업설명을 하도록 함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게 되어 그 사유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나. 위치 : - 시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고속도로 연결)  
- 종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연결)
- 다. 사업규모 : L=20.2km(왕복4~6차로)
- 라. 사업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마.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공사), 30년(운영)

### 2. 설명회 생략사유

지역	개최일시	장소	생략사유
광명시	2013.04.12(금) 오전 10시	학은동 주민센터	정상개최
부천시	2013.04.18(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통마당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일부 참석주민에 한해 별도 설명진행)
구로구	2013.04.15(월) 오후 14시	목양교회	정상개최
양천구	2013.04.17(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정민원실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양천구청 요청으로 5월29일 설명회 개최)
강서구	2013.04.19(금) 오후 14시	방화3동 주민센터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 3. 설명회 대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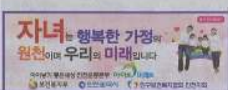
- 광명시(www.gm.go.kr), 부천시(www.bucheon.go.kr), 구로구(www.guro.go.kr), 양천구(www.yangcheon.go.kr), 강서구(www.gangseo.seoul.kr)의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사업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환경관리과(02-2680-2288), 부천시청 환경정책과(032-625-3167), 구로구청 환경과(02-860-2413), 양천구청 맑은환경과(02-2620-3457), 강서구청 환경과(02-2600-4022)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031-426-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1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인천일보

인천 15-25℃ 구름 조금  
수일 15-28℃ 구름 조금

1988년 7월 15일 창간 제 7238 호

news.itimes.co.kr

대표전화 : (032)4520-114 2013년 6월 3일 월요일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게 되어 그 사유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나. 위치
  - 시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고속도로 연결)
  - 종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연결)
- 다. 사업규모 : L=20.2km(왕복4~6차로)
- 라. 사업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마.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공사), 30년(운영)

### 2. 설명회 생략사유

지역	개최일시	장소	생략사유
광명시	2013. 04. 12 (금) 오전 10시	학운동 주민센터	정상개최
부천시	2013. 04. 18 (목) 오후 15시	부천시청 소통마당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일부 참석주민에 한해 별도 설명진행)
구로구	2013. 04. 15 (월) 오후 14시	목양교회	정상개최
양천구	2013. 04. 17 (수) 오후 14시	신정3동 현장민원실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양천구청 요청으로 5월29일 설명회 개최)
강서구	2013. 04. 19 (금) 오후 14시	방화3동 주민센터	주민 방해로 개최불가

### 3. 설명회 대체 방법

- 광명시(www.gm.go.kr), 부천시(www.bucheon.go.kr), 구로구(www.guro.go.kr), 양천구(www.yangcheon.go.kr), 강서구(www.gangseo.seoul.kr)의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사업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환경관리과(02-2680-2288), 부천시청 환경정책과(032-625-3167), 구로구청 환경과(02-860-2413), 양천구청 맑은환경과(02-2620-3457), 강서구청 환경과(02-2600-4022)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031-426-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3.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다. 공청회 개최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실시완료함

### (1) 공청회 개최 개요

구 분	내 용
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3. 7. 22(월) 오후 7시</li> <li>○ 장소 : 부천시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3층 영상관</li> <li>○ 참석인원 : 200여명(참석자 명부 서명 153명)</li> </ul>
회의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li> <li>○ 사업현황 설명</li> <li>○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소개</li> <li>○ 주민대표 의견 진술</li> <li>○ 사업자 답변</li> <li>○ 폐회사</li> </ul>

### (2) 공청회 참석자(의견 진술자 및 답변자)

구 분	성 명	소 속	참석여부
주재자	장운영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의견진술자	한원상	주민대표, 부천시	○
	최진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부천시	○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부천시	○
	신충식	주민대표, 양천구	○
	황익진	주민대표, 구로구	○
답변자	김윤수	코오롱글로벌(주)	○
	조완형	다산컨설턴트	○
	박민대	동림P&D, 수자원분야	○
	권 일	동림P&D, 대기분야	○
	범정진	선진ENG, 소음·진동분야	○
	양훈철	KSM기술(주), 교통분야	○

(3) 공청회 개최 공고

1920년 4월 1일 창간 제28592호 45판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 東亞日報

dongA.com

단기4346년 (음력 5월 27일 丙申) 2013년 7월 5일 금요일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치 : - 시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연결)  
 - 종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연결)  
 다. 사업규모 : L=20.200km(왕복4~6차로)  
 라. 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마.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공사), 30년(운영)

###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3. 7. 22(월) 19:00	부천 자연생태박물관 3층 영상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

###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 및 기한

• 광명시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2013. 7.15(월) 까지)  
 (☎ 02-2680-2288)

### 4. 문의처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031-426-4163)

2013년 7월 5일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치

- 시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연결)

- 종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연결)

다. 사업규모 : L=20.200km(왕복4~6차로)

라. 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마.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공사), 30년(운영)

###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3. 7. 22(월) 19:00	부천 자연생태박물관 3층 영상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

###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 및 기한

○ 광명시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2013. 7. 15(월) 까지)  
(☎ 02-2680-2288)

### 4. 문의처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031-426-4163)

2013년 7월 5일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4) 공청회 개최현황(사진)



## 2. 주민의견수렴 결과

### 2.1 관계기관 검토의견

#### 가. 광명시(주관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영향예측 및 산정과정과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li> <li>- 대상지역 인근에 대기질, 수질, 토양·지하수 등 국가운영 측정망이 존재할 경우 본 사업의 환경현황 측정자료와 비교·분석</li> <li>- 계획 중인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 사업지구가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함</li> <li>- 환경신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환경생태계 건전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영향예측 및 산정과정과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li> <li>- 사업노선 인근 국가운영 측정망이 존재할 경우 환경현황 측정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제시함</li> <li>-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li> <li>- 환경신기술을 검토하여 적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시 통과 전구간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li> <li>- 본 사업의 계획노선이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 사업지구를 관통하므로 주거지역과 정온시설에 근접함에 따라 사업 시행 및 운영 시 주거환경악화와 산림훼손 및 생태축의 단절이 야기됨으로 광명시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일 지상노출 구간이 있는 경우 소음저감대책으로 전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반영]</li> <li>-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로 현재 주변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방음벽, 터널 등)을 수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예측 환경영향 사전 예방</li> <li>-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 발생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외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li> <li>-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 발생시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토록 계획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질 분야	가. 현황 조사지점 선정 및 분석 ○ 대기질 측정 자료는 2009년 2차례, 2012년 1차례 조사한 것으로 최근 현황파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1계절 이상을 추가 측정 후 현황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황조사 지점을 확대하여 측정하기 바람	○ [반영]현황조사 4지점을 추가하여 총 10개 지점을 2013년 4월, 7월, 8월에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함	
	나. 영향예상 대상지역 조사 ○ 대기질 영향에 민감한 사업지구 인근의 주요 지역(광명 시흥택지지구 예정지역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최단 이격거리, 가구수, 지형적 차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반영]사업노선 주변 영향예상지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최단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여부 파악을 위한 단면도 등을 제시함	
	다. 배출량 산정시 전환율 적용 ○ 배출량 산정시 TSP에서 PM-10 전환율, NO <sub>x</sub> 에서 NO <sub>2</sub> 전환율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100% 전환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반영]배출량 산정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TSP에서 PM-10 전환율, NO <sub>x</sub> 에서 NO <sub>2</sub> 전환율을 100%로 가정하여 산정하여 제시함	
	라. PM-10 관리방안 수립 ○ PM-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노선 인근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노선에서 10m 이격)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PM-10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함	○ [반영]사업노선 인근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므로 운영시 PM-10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	
	마.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사업지역 주변에 개발계획(광명 시흥택지지구 예정지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기오염발생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반영]본 사업노선에 따른 대기질 예측시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	
	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계획노선과 10m 이격하여 위치한 정온시설들이 다수 존재하여 영향이 예상되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시 사업노선과 인접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정온시설은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2. 수질 분야	<p>가. 수질현황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시점별로 수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천유형별(또는 계절별) 수질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추가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7개 지점에 대하여 2회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함</li> </ul>	
	<p>나. 비점오염물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은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비용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비점오염저감시설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2013. 7.13, 환경부」에 의거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비용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면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바, 성토구간, 절토구간, 교량구간 등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절·성토구간 및 교량구간 등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으로 대부분 장치형을 제시하였으나, LID 기법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2013. 7.13, 환경부」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형 시설(식생수로) 설치계획을 제시함</li> </ul>	
	<p>다. 지하차도 침수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의 내수침수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하차도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지하차도의 내수배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지하차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도로설계편람에서 명시된 5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하였음</li> <li>-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라. 수질오염 총량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1일 부터 광명시 전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이므로, 위 사업은 수질오염총량 기본방침 제27조 3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따라서 수질오염총량 검토서(개발사업에 따른 부하량 산정 자료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협의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으며, 부천시의 경우 2014년 5월 1일, 광명시 2014년 5월 7일, 서울시 2014년 5월 9일에 개발부하량 할당을 득함</li> </ul>	
<p>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 주기는 분기 1회 이상 측정·분석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는 분기1회로 계획하였음</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3. 토지 ·토양 분야	<p>가. 생활권 단절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으로 인해 지역간 연결로, 마을-농경지간 연결로 등에 단절이 예상되고, 접근성 악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절이 예상되는 주요 마을 및 가옥의 현황을 조사하고, 연결교량 및 통로박스 등 생활권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통로박스 설치 기준 명시)하여 도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지역간 연결, 마을-농경지간 단절 해소를 위해 부체도로, 통로박스 설치 계획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로박스를 신설할 경우, 이용자가 빈번하거나 마을 인접지역을 횡단하는 10m 이상의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개방도를 고려하여 규격을 증대하고 조명설치 등의 계획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통로암거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li> </ul>	
	<p>나. 토양오염 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옥, 축사 등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을 예측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구 범위, 정화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지장물중 공장, 축사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에 대한 신고 등 적법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정화대책을 제시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 정화 및 검증 등을 실시 등 저감방안을 제시함</li> </ul>	
4. 자연 생태 분야	<p>가. 동·식물상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조사 시기는 계절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춘/추계, 하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4차에 걸친 동·식물상 조사가 주로 추계와 동계에 이루어짐. 본 사업은 동·식물상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황조사를 추가 실시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추가 현장조사(2013년 7, 8월, 2014년 3, 4월)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업노선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유류의 로드킬 예방을 위해 침입방지웁스 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포유류의 이동경로 등을 감안하여 동물이동로 확보 방안(통로박스, 유도울타리 등)을 검토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조경계획 수립시 주변산지(구름산, 서독산 등)의 생태환경 분석을 토대로 기존 식생의 연계,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조성 등 소생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세부 조경계획 수립시 주변산지의 생태환경 분석을 토대로 수종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식생의 연속성유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5. 소음·진동 분야	<p>가.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과 인근 정온시설과의 이격 거리가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항타시 포함)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 특히 저감대책으로 저소음형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저감수단이 너무 미흡하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건설소음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나. 운영시 소음·진동 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음 포장도로 관리계획 수립</li> <li>- 저소음포장재의 재질, 성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li>- 저소음 포장도로는 이물질에 의한 공극의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 진공청소 차량 등에 의한 관리계획(소음저감 효과의 유효기간 및 구체적인 포장도로 관리방안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저소음 포장재의 제원을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감쇠기 설치 관련</li> <li>- 저감대책으로 소음감쇠기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근거가 미약한 저감수단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터널,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포장재 시공계획을 수립함</li> </ul>	
	<p>마. 사후환경영향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및 운영시 사업노선에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요 부지 경계부 또는 주거지 등에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공사시 사업노선 부근 주요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소음자동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 조사시와 공사시(항타 포함), 발파시, 운영시로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종별/시기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6. 경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성토와 도로 노출구간에 대한 주변과 도로이용에 따른 가시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공사로 인한 자연경관 영향 및 사면 가시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역과 지점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절성토, 도로 노출구간 등에 대한 추가 조망점을 선정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 관련 시설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검토, 사면 규모의 적정성, 주변 자연식생과의 조화로운 식재계획 등 규모와 형태, 소재에 대한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에 맞는 구체적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영업소 및 휴게소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 기타 검토의견 (부서별 의견)	<p>가. 도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시 통과구간(L=6.649km)에 대하여 보금자리지구 입주예정인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완전 지하화가 필요함 ⇒ 지하시공 못하는 구간은 방음터널로 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로 현재 주변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방음벽, 터널 등)을 수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독로 IC입체화, 휴게소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반영] - 현 계획(평면교차)을 적용하여도 교통정체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서비스 수준 "C") (3,176대/시, 2024년), - 녹지훼손 최소화를 위해 휴게소는 당초 절토부에서 성토부로 위치를 이전하였음</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 기타 검토의견 (부서별 의견)</p>	<p>나. 명품도시과</p> <p>○ 당해 도로는 광명시의 주요 산악축인 도덕산~구름산~가학산을 종단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산림훼손 및 도덕산~가학산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너구리, 족제비, 고라니, 멧토끼 등 14종에 이르는 포유류가 이동통로 단절로 인하여 멸종가능성, 또한 보금자리택지지구 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필지 등)과 인접하여 사업완료 후 소음 및 진동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므로 고속도로 전구간에 대하여 지중화 및 방음터널 설치</p>	<p>○ [반영]</p> <p>- 녹지훼손 최소화를 고려하여 구름산, 도덕산 등 신지 끝자락으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이동로의 단절을 최소화 함</p> <p>- 사업구간과 그 주변에 대한 생태네트워크(Blue-Green Network)와 대상노선으로 인해 영향 및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저감시설(교량, 통로암거, 측구, 유도휀스 등)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p>다. 치수방재과</p> <p>○ 지하수법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굴착(보링 포함)전 행위신고 및 공사에 따른 지하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p>	<p>○ [반영]절토·굴착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 미리 관할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할 계획이며, 공사에 따른 지하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p>	
	<p>○ 고속도로 구간 내에서 배출되는 우·오수 등 배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전 시와 협의 후 시공하기 바람</p>	<p>○ [반영]우·오수 등 배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자체와 협의토록 함</p>	

나. 부천시(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가. 계획노선 변경(동부천/C 설치 취소 및 지하화) 및 부천시 통과 지상 전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방안 강구</p> <p>○ 본 사업은 지상구간의 계획노선이 전용주거지역과 대중시설에 근접함에 따라 사업시행 및 운영 시 주거환경 악화 및 시설이용에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많음</p>	<p>○ [부분반영] 고속도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IC/JCT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하화</p> <p>- 수도권(도심지)에서 고속도로 IC 설치간격은 3km 이내(도로설계요령 : 2~5km)이나</p> <p>- 동부천C 삭제시 광명IC/JCT에서 고강IC까지는 15km로 부천시민 등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p> <p>- 전용주거지역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통과하며, 공사시/운영시 저감시설 설치(차폐식재, 방음시설) 및 까치울터널 설치(등산로 확보)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함</p>	
1. 총괄	<p>○ 또한 동부천/C 설치 시 산림훼손 및 부천시 생태축의 단절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동부천/C 설치를 취소하고, 부천시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강/C 신설을 통한 교통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상노출 구간이 있는 경우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터널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p>	<p>○ [미반영] 고속도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IC/JCT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하화</p> <p>- 수도권(도심지)에서 고속도로 IC 설치간격은 3km 이내(도로설계요령 : 2~5km)이나</p> <p>- 동부천C 삭제시 광명IC/JCT에서 고강IC까지는 15km로 부천시민 등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p> <p>- 동부천C 설치시 산림훼손면적은 지양산 전체산림면적의 1.8%로 최소화 하였으며, 까치울터널, 신정·2터널 설치로 등산로 및 생태축 연계성 유지</p> <p>- 고강C 신설을 위한 3개안(역곡로, 봉오대로, 화곡로)을 검토결과 부천, 양천, 구로 주민의 우회거리 과다, 기존 구조물과의 간섭, 봉오대로 혼잡가중, 역곡로 확장 및 지장물 저축(학교)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으로 동부천 IC 설치보다 불리함</p>	
	<p>나. 옥길동 노선 조정</p> <p>○ 옥길동 개구간은 전체를 지하화 하여야 하며, 주거지역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p>	<p>○ [반영] 옥길동 일부구간을 지하화로 계획함 (주민들과 협의완료)</p>	
	<p>다. 미 예측 환경영향 사전 예방</p> <p>○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외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p>	<p>○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 발생시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토록 계획함</p>	
	<p>라. 환경영향 조사시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p> <p>○ 환경영향 조사시 주민의 참여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p>	<p>○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주민의 참여 요구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p>	
	<p>마. 건설 및 운영관련 민원 적극 대처</p> <p>○ 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 차량소음, 비산먼지, 차량 공회전 등에 의한 환경영향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사전 준비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p>	<p>○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2. 항목별 검토 의견</p> <p>가. 대기환경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치울정수장 지점에서의 대기질 조사 및 대기오염물질 유입(착지)에 따른 상수도오염 예측평가 실시</li> <li>-부천시 까치울정수장은 부천시민의 식수원 생산시설로 동부천I/C 건설 예정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행 및 운영시 주풍향인 서풍·북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분진 등의 유입에 따른 상수원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되어 이에 따른 대기질 조사 및 상수도오염 예측평가를 실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까치울 정수장 인근의 대기질 현황을 추가조사하여 현황에 반영하였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까치울 정수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대기질 기준을 만족하였음</li> <li>○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정수장입지 주변여건 및 운영현황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li> </ul>	
<p>나. 자연생태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생태환경 재조사</li> <li>-사업시행시 직접(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포함한 동·식물의 계절별 분포현황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가을 및 겨울에 편중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바, 녹지대 훼손의 정확한 근거 마련 및 대책 수립을 위해 4계절 자연생태환경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추가 현장조사(2013년 7, 8월, 2014년 3, 4월)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업노선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함</li> </ul>	
<p>다. 생활환경 분야(소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현황 재조사</li> <li>-동부천I/C 인근 부천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먼 지점(전원마을 4단지 주차장)의 조사로 실질적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바 전원마을 1·3단지에서의 소음·진동 현황 재조사 및 예측평가가 이루어져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해당의견을 반영하여 전원마을 1, 3단지에서 소음진동 현황 추가조사(2013년 4, 7월)및 예측·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다. 생활환경 분야(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천 I/C 설치 시 방음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I/C 진출입로 주변에 둔덕 및 차폐수목 식재구간을 확대하여야 하며, 개구부 구간을 최대한 축소하여야 할 것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일부구간은 복개터널(까치울터널)을 설치하고, 본선 진출입구간의 I/C 진출입로 주변에 방음벽 및 차폐수목 식재구간을 확대하여 소음피해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함</li> </ul>	
3. 기타 검토 의견 가.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음</li> </ul>	
나. 교통영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라~강서 BRT시범사업 2단계구간의 중첩구간(고강지하차도~방화로)에 대해서는 수도권교통본부와 협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2013. 1.30, 03.07에 수도권교통본부와 중첩구간 대하여 협의함. 중첩구간은 BRT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노선 중 지상구간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한 교통환경 악화를 감안할 때 전면 지하화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반영]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시설은 꼭 필요하며 부천시 통과구간 중 대부분 지하화(동부천IC 설치구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천 IC 설치 구간과 인접 거주지와 의 거리가 가까워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동부천 IC를 고강 IC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통합 IC 설치시 기존구조물(지하차도, 고가차도) 이격거리 부족 → 설계기준 위배</li> <li>○ 학교, 자동차 매매시장 저축 및 기존도로 확장필요</li> <li>○ 부천시(양천, 구로)의 효율적인 교통처리와 이용자 편의향상 및 주변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동부천IC는 반드시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가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접수할 경우 우리시와도 반드시 협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자 등의 검토의견 반영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승인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임</li> <li>- 부천시에 관계기관 T/F 회의 시 교통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음</li> </ul>	
다. 녹색농정 분야(부천 자연생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원</li> <li>- 시설물 : 부천자연생태공원</li> <li>-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무릉도원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 주차장</li> <li>- 총면적 : 237,422㎡</li> </ul> </li> </ul>	-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다. 녹색농정 분야(부천 자연생태 공원)</p>	<p>○ 운영상 문제점</p> <p>-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노선(고가도로)이 부천자연생태공원의 부설주차장을 통과함에 따라 주차장이 많이 손실되어 시민의 이용불편 등 생태공원 운영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 초래</p> <p>-고가도로 하부는 햇빛과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특수지역이므로 식물이 생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공원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임</p> <p>○ 검토(개선요구) 사항</p> <p>-계획대로 추진시 사업자는 생태공원 주차장을 통과하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p> <p>-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약 40%(주차 70면)가 손실됨에 따라 주차장 대체 시설 설치가 반드시 요구됨</p> <p>※현 부설주차장 : 주차면수 182대,</p>	<p>○ [반영]</p> <p>-고가교 하부공간에 주차장 부지 활용을 고려하여 주차장 노면과 고가교 상부거더와의 이격거리가 최소 8.5m로 계획하였으며, 교각설치로 인한 주차장 부지 손실 면적(5대, 106m<sup>2</sup>)을 최소화하여 공원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함. 또한 사전에 부천시와 협의토록 하겠음</p>	
<p>라. 하수처리장 운영분야</p>	<p>○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부근 개구부 구간의 고속도로 소음차폐를 위한 수목(측백 및 개나리 등 약 2,160주) 식재 필요</p>	<p>○ [일부반영]일부구간은 복개터널(160m)로 계획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옥길동 주민과 협의 완료)</p>	
<p>마. 정수장 운영 분야</p>	<p>○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변화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심미적 거부감 확산이 우려됨</p> <p>○ 수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응집지 및 침전지 상부 덮개 설치가 요구되며, 이를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의 원인자 부담이 필요함</p>	<p>○ [반영]까치울 정수장 인근의 대기질 현황을 추가조사하여 현황에 반영하였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까치울 정수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대기질 기준을 만족하였음</p> <p>○ [미반영]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정수장입지 주변여건 및 운영현황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p>	



다. 구로구(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동 현대홈타운 하부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을 미개발지 하부로 우회하는 방안 검토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현대홈타운 터널통과는 선형계획에 부합하는 최대깊이로 계획하는 등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천IC와 접한 오리로(궁골길) 도로확장 검토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교통분석결과, 확장의 필요성은 없으며 변속차로 설치 등 교차로 운영의 최적화 방안으로 검토·적용하였음</li> </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천IC 진·출입부는 공동삼거리에서 접속하게 됨에 따라 이 구간은 4지교차로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기존 오리로의 도로 형태는 편도 2차로로 형성되어 있어,</li> <li>○ 오리로 도로 형태상 향후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 직진 차로가 각각 1차로를 차지하므로 오리로에서 신정로 진입 우회전 차량이 간섭을 받게 됨</li> <li>○ 따라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기존 오리의 좌우 1차로의 가·감속을 위한 도로 폭원 확장과 신정로 구간에 대한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사거리 교차로의 확장 정비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동부천IC 접속시 오리로에서 부천방면 좌회전 2개차로, 직진 1개차로, 우회전 1개차로를 확보하여 공동삼거리 교차로 확장정비토록 계획함</li> </ul>	

라. 양천구(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 종합의견</p>	<p>○ 2013.4.4. 대규모 민원과 간담회의 (참석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과장, 신정3동 이펜하우스 비상대책위원장, 지양산보존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양천구 맑은환경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정3동장, 서서울고속도로사업 단단장)시 논의되었던 민원사항 중 민원인들이 제시한 내용인 동부천IC 진입로 관련 각각의 (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내용 중 집단민원인이 제시한 대안#3(약대~신월광역도로진입)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잘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는 2010.10월 정부협상(안)으로 추진하거나 청원요구내용과 같이 정부협상(안)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광역도로에서 진입하는 요구 안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부분반영] 주민이 요구하는 약대-신월 접속시 접속부의 내리막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높고, 영업소와 접속도로 사이의 짧은 연결로로 교통정체가 예상되며, -접속 지역이 길주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화물트럭터미널 중차량 등 교통량 증가로 정온시설(학교, 병원) 및 고밀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저하가 예상됨 -또한, 까치울 마을과 근접하여 상대민원이 예상되며, 녹지훼손이 과다함 -반면, 길주로 접속시 부천시, 양천구, 구로구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화물트럭터미널 중차량 통행을 주거지역을 우회하므로 길주에 접속토록 계획하였음</p>	
	<p>○ 그리고 해당 부서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시고, 특별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이전에 주민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본 사업계획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대규모 민원(위원장 : 김연기, 부위원장 이도열 12,000여명)의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p>○ 또한 양천구 공사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 중 일부는 내용이 부실한 부분과 부서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조치하시고 추후 이로 인한 사업 변경 사항 및 의무이행 사항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반영]초안공람공고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 ( '12.7.1 / ' 13.01.22 / '13.02.25)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해당 절차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며, 주민의견 청취 기회를 추가로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음 - '13/5/29 : 주민설명회 개최 - '13/7/22 : 공청회 개최 - '13/9/30 : 주민간담회 개최</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 부서별 의견 가. 도로과</p>	<p>○ 2010.10월 정부협상(안)의 동부천C 진입로가 부천지역의 반대로 실시 설계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양산 보존 대책 위원회의 동부천C 진입로반대 주민청원서(주민 12,134명 서명)』가 제출되어 사업시행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입로에 대한 변경 등 세부검토중으로 협의하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은 실시설계 상의 동부천C 진입로 계획으로 작성되었기에 동부천C 진입로 변경 [2010.10월 정부협상(안)으로 추진 또는 청원요구 내용과 같이 정부협상(안)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광역도로에서 진입요구-우리구 요구사항] 등 확정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부분반영] - 동부천C 접속위치가 변경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겠음</p>	
<p>나. 치수방재과</p>	<p>○ 지하수법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굴착(보링 포함) 전 행위신고를 하여야 함</p>	<p>○ [반영] 절토·굴착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 미리 관할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도록 계획함</p>	
	<p>○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및 공사 중 장비 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시기 바람</p>	<p>○ [반영] 터널 굴착에 따른 유출수 처리를 위해 터널폐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시방서 및 보고서에 명기토록 함</p>	
	<p>○ 고속도로 구간내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및 예방대책을 시방서에 명기하시기 바람</p>	<p>○ [반영]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시방서 등 각종 보고서에 명기토록 함</p>	
	<p>○ 터널 집수정 등 고속도로 구간내에서 배출되는 우수 등 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전 우리부서와 협의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p>	<p>○ [반영] 우·우수 등 배수시설 계획 수립하여 공사전 관할지자체와 협의토록 함</p>	
<p>다. 교통행정과</p>	<p>○ 본 평가서에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주변 교통여건 변화 등 교통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도시교통환경촉진법」에 의거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후 면밀히 검토할 사항임</p>	<p>○ [반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요약사항을 제시토록 함</p>	
	<p>○ 참고로 해당 고속도로의 계획노선대 및 동부천C 주변에 신정보금지리택지건설 계획이 있어 신정보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임</p>	<p>○ [반영] 신정보로 교통영향분석결과를 제시토록 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반영하겠음</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라.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환경분야</li> <li>- 절·성토 공사시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한 안정화대책 수립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탈면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구 및 도수로 등은 우기를 대비하여 선시공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측구 및 가배수로 등은 우기를 대비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면 형성이 완료된 지역은 조기 녹화 실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발생한 비탈면 지역은 조기녹화를 실시하는 등 비탈면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상 원형이 보전된 지역이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원형이 보전된 지역이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저감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생태환경분야</li> <li>- 산림훼손 예상지역은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 및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복원대책 강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신정1,2터널을 설치하였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편화 방지하여야 함</li> <li>(산림지역의 단절로 동물의 서식지 단절 및 소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산림생태계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li>- 신정1,2터널을 설치하여 생태계 파편화를 방지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의 천이 상태를 고려하여 주변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발달하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물상과 식생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하여 주변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시행시 비산먼지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 서식 보호를 위한 공사시기 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계획 수립시 동물의 번식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li> <li>- 지양산 보존 대책위원회의 동부천IC 진입로 반대 주민청원이 도로과로 접수됨을 감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10장(601page)의 비교안 중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선 검토 요망</li> </ul>	-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마. 맑은환경과 환경분야(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관리</li> <li>-계획노선 주변의 토양성분 및 오염도 조사 반영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 주변에 토양오염도 조사지점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 터널환기구 설치개소와 위치, 차량배기가스 방지시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사업노선내 터널환기구 계획은 없으며, 신정1,2터널은 짧은 단터널로 별도의 배기가스 방지시설은 필요치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li> <li>-대기질(91page)</li> <li>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94page)</li> <li>-공사시 : 예측항목 미흡</li> <li>(1) 공사시 및 (2) 운영시</li> <li>(가) 예측항목 : 주요대기오염물질 PM<sub>10</sub>, NO<sub>2</sub></li> <li>-양천구는 O<sub>3</sub>, SO<sub>2</sub>, CO 농도가 서울시 연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li> <li>-공사장비 및 차량 운행시 CO/HC,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여 공사장 인근 지역주민이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li> <li>-또한, PM<sub>10</sub> 보다 PM<sub>2.5</sub>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추가 예측항목으로 편성 보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대기질 예측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li> <li>-공사시 : PM-10, PM-2.5, SO<sub>2</sub>, NO<sub>2</sub>, CO</li> <li>-운영시 : PM-10, PM-2.5, SO<sub>2</sub>, NO<sub>2</sub>, CO, H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144page)</li> <li>나.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li> <li>(1) 공사시</li> <li>(2) 예측방법</li> <li>-온실가스 6개항목(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SS, PFCS, SF<sub>6</sub>)중 일부 항목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만 예측함</li> <li>-나머지 3개 항목도 예측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온실가스 예측시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지침, 2013, 환경부]에 따라 산정대상 온실가스 및 배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함(도로사업에서 산정대상 물질은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항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저감방안(154page)</li> <li>(2) 운영시(156page)</li> <li>(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 구체적인 사용 내역 제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환경분야(2)	<p>○ 소음진동(442page)</p> <p>가. 현황</p> <p>(3) 조사방법 및 측정지점</p> <p>〈표 6.5.2-1〉 소음진동 측정지점</p> <p>-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지상구간이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4단지(우)에 대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주민 불신 해소 필요</p>	<p>○ [반영]해당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함</p>	
	<p>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p> <p>(5) 예측결과(469page)</p> <p>(가) 공사시</p> <p>-소음 : 정온시설별 건설소음도 예측결과 소음 목표기준을 초과함</p> <p>(나) 운영시 (483page)</p> <p>-교통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소음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p> <p>다. 저감방안</p> <p>(가) 공사시(484page)</p> <p>-(가)~(라)의 저감방안으로는 소음저감 대책으로는 미흡함</p> <p>-공사장 부지경계선에 완벽한 흡음형 방음벽(망) 설치후 공사토록 저감방안 보완</p>	<p>○ [미반영]공사시 건설소음 예측결과, 소음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별도의 저감시설이 필요치 않음</p>	
	<p>(나) 운영시(503page)</p> <p>-신정동 이펜하우스 지점 지상도로는 투명 동형 흡음식 방음벽 설치토록 보완(참고, 외각 순환도로중 안양시에 설치된 동형 방음벽)</p>	<p>○ [미반영]해당구간은 신정1터널(L=440m)구간으로 운영시 교통소음에 의한 영향은 없음</p>	
환경분야(3)	<p>[대기질]</p> <p>○ 공사시</p> <p>-터널 공사시 터널내 암반 굴착 및 발파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과 굴착에 의해 발생하는 버력처리에 대한 장비운행 및 토량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p>	<p>○ [반영]터널 공사시 암반 굴착 및 발파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주기적인 살수, 환기시설 및 집진차량을 운영하여 비산먼지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환경분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li> <li>-터널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터널 출구부 및 도로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분진 및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터널 출구부 및 도로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소음·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터널 공사시 항타 및 발파로 인한 인접 주거시설 건물의 균열 및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항타 및 발파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li> <li>-도로개통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에 따라 생활환경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도로교통량에 따른 주변 주거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을 3차원 소음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 총별 예측을 실시하고 단지내 등음선도를 제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교통소음 예측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3차원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별 예측을 실시하고 등음선도를 제시함</li> </ul>	
	<p>[수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터널내 암반굴착시 석분, 토사류, 시멘트류 등 오염물질이 발생, 지하수 및 작업용수의 혼합으로 인한 오탉수의 발생에 따른 하류수계의 오염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오·탁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 처리시설 등을 계획하였으며, 처리수는 재이용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 굴착으로 인한 다량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와 이에 따른 지반안정성 저하로 인접 주거시설의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지하수 영향 예측결과 지하수위 저하가 미미하여, 지반침하 등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li> </ul>	

마. 강서구(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가.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공해(소음·먼지·매연 등) 발생으로 주민생활 환경오염 피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정량적인 예측분석을 실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li> </ul>	
나. 도로과	1) 민자고속도로 방화로 통과시는 당초 방화로 개설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정상적인 도로 기능 상실로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므로 민자고속도로 도로노선을 대심도 터널로 완전 지하화하거나, 우리구 외곽으로 노선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대심도 터널 혹은 강서구 외곽으로 노선변경은 설계기준 미달, 저속시설 대폭증가, 간선도로 연결선 미확보 등으로 채택곤란</li> </ul>	
	2) 민자고속도로 개통시 방화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축소됨에 따라 강서공고 앞 사거리 주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등 강서공고 앞 사거리에서 치현터널로 직진차로는 2차로(단속류)로 치현터널 1차로(연속류)에 접속으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li> </ul>	
	3) 방화로에서 방화대교를 이용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체계로 교통불편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방화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용으로 건설되어 평택~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고속도로 전용으로 활용 계획</li> </ul>	



바. 환경부(협의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사업(수원-광명고속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연계)으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영향예측 및 산정과정과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붙임의 “평가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li> <li>-대상지역 인근에 대기질, 수질, 토양·지하수 등 국가운영 측정망이 존재할 경우 본 사업의 환경현황 측정자료와 비교·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영향예측 및 산정과정과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li> <li>-사업노선 인근 국가운영 측정망이 존재할 경우 환경현황 측정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범위 내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신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환경생태계 건전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환경신기술을 검토하여 적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li> <li>-특히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공고 및 공람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울러 본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본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II. 입지 적정 여부 검토 의견 1.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인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부합하여 수원-광명,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연계, 남북 1축의 지선고속 간선망을 구축</li> <li>-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가학IC 및 광명IC(JCT) 설치지역은 택지지구 예정지와 근접하여 환경적 여건변화에 따른 보전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선형조정 등 계획 변경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로 기존 노선으로 계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계획으로 인한 인구이동, 주거변화가 예상되므로 평가항목에 제외된 인구 및 주거 항목을 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통계자료 분석 및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노선계획을 분석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인구 및 주거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등 여러 분야 검토결과 계획이 가장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나 3개의 대안노선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 사업계획 노선을 최적으로 선정한 사유를 다른 대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저감방안 강구후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대안노선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최적으로 선정한 사유를 제시함</li> </ul>	
2. 입지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점부인 가학IC 설치지역은 광명시흥택지예정지구 2단계 지역내로 현 IC 계획으로 인해 단절지역이 발생되므로 설치계획 재검토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가학IC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부 위치를 변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JCT 설치지역은 광명시흥택지예정지구 1단계 지역과 근접하여 향후 택지지구 입주시 학교 등 정온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워 대기 및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선형조정 등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li> <li>※ 광명시흥택지지구 조성여부에 따라 가학IC와 광명IC를 합치는 방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로 기존 노선으로 계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천IC 설치지역은 까치울전원단지와 신정3지구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해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화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의 영향(대기 및 소음 등)이 우려되며, 독수리아파트 인근 군사시설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방화지하차도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독수리아파트는 서울시와 국방부가 2018년까지 이전토록 협의가 완료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III. 항목별 검토 의견 1. 대기질 (온실가스)	가. 현황조사지점 선정 및 분석 ○ 2009년 외 대기질 측정자료(2012)는 1차례만 이루어져 최근 현황파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추가 측정 후 현황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황조사 지점을 총 6지점으로 선정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반영]현황조사 4지점을 추가하여 총 10개 지점을 2013년 4월, 7월, 8월에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함 -현황조사 지점은 정온시설 등 주변 현황을 고려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제시함	
	나. 영향예상 대상지역 조사 ○ 대기질 영향에 민감한 사업지구 인근의 주요 지역(단독 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지역, 학교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별로 최단 이격거리, 가구수, 지형적 차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특히 광명시흥택지구 예정지역의 경우 택지지구 배치도, 이격거리 등 상세한 자료 제시	○ [반영]사업노선 주변 영향예상 지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최단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여부 파악을 위한 단면도 등을 제시함 ※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	
	다. 배출량 산정시 전환율 적용 ○ 배출량 산정시 TSP에서 PM-10 전환율, NO <sub>x</sub> 에서 NO <sub>2</sub> 전환율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100% 전환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반영]배출량 산정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TSP에서 PM-10 전환율, NO <sub>x</sub> 에서 NO <sub>2</sub> 전환율을 100%로 가정하여 산정하여 제시함	
	라. PM-10 관리방안 수립 ○ 현황 분석결과 PM-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계획노선 인근 주거시설(노선에서 10m 이격)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PM-10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함	○ [반영]사업노선 인근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므로 운영시 PM-10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	
	마. 1시간 평균 NO <sub>2</sub> 영향예측 추가 ○ 공사시 및 운영시 1시간 평균 NO <sub>2</sub> 영향예측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 실시 후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시간별(첨두시) 측정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평균자료에 2.5(EPA-454/R-92-019, 4-15쪽)를 곱하여 활용 가능	○ [반영]공사시 1시간 평균 및 운영시 첨두시 NO <sub>2</sub>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제시하였으며, 첨두시 현황자료는 시간별 측정 자료 중 최대값을 사용하였으며, 필요시 평균자료에 2.5를 곱한 값을 적용하여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III. 항목별 검토 의견 1. 대기질 (온실가스)	바. B/P장 운영에 따른 영향예측을 추가로 실시하여 공사시 누적평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출량 산정과 기상조건을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여 적용	○ [반영] B/P장 운영계획 및 주변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 ○ [반영] 최악조건에 배출량 산정과 모든 기상조건을 입력하여 대기질을 예측하여 제시함	
	○ 저감방안 수립 후 적용 전과 후에 대한 물질별 영향예측 결과를 비교표로 작성	○ [반영] 저감방안 수립 전·후를 비교하여 제시함	
	○ PM-10 저감을 위한 추가 살수차량 운행 등 구체적인 저감대책 강구	○ [반영] PM-10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	
	사.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터널운영에 대한 저감대책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터널 영향예측시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쪽으로 주풍향을 가정하여 실시	○ [반영] 방화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토양을 이용한 대기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터널 영향예측시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방향을 포함한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 예측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함	
	- 터널 운영에 의한 영향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주거시설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BAT를 발휘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전과 후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비교·검토	○ [반영] 터널내 환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예측 전·후를 비교·검토하여 제시함	
	○ 방화지하차도 토양정화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위치, 배출 및 처리 환기량, 가동방식, 처리효율 등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반영] 방화지하차도에 설치될 토양을 이용한 대기정화시설의 제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업지역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기오염발생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누적평가는 본 사업의 배출량과 계획된 개발사업들의 배출량을 함께 입력자료로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	○ [반영]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 - 누적평가는 본 사업과 개발사업의 배출량을 함께 입력자료로 적용하여 제시함	
아. 녹지계획 ○ 절·성토 사면부, 터널 입·출구, IC, JCT 등의 지역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재계획 수립이 필요함	○ [반영]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정화수와 향토수를 반영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1. 대기질 (온실가스)	<p>자.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과 10m 이격하여 위치한 정온시설들이 다수 존재하여 영향이 예상되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이격거리가 가까운 정온시설을 누락할 경우 사유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시 사업노선과 인접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정온시설은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필요</li> <li>- 공사시 저탄소 자재 사용 등과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조사관리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립하여 제시함</li> </ul>	
2. 수 질	<p>가. 수질현황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회에 걸쳐 수질현황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나 2009년 2회, 2012년 1회로 최근 수질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조사시점별로 수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천유황별(또는 계절별) 수질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추가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추가조사(2013년 4, 7월)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함</li> </ul>	
	<p>나. 침사지 설계 및 관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사유출량 산정과 관련된 원단위 적용시 연간일수(365일)가 아닌 강우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부유물질 농도를 예측하고 침사지 등 저감대책으로 인한 저감효과를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토사유출량 산정시 강우일수를 적용하여 예측하였으며, 부유물질 목표농도를 25mg/L 설정하여 목표농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사지 설계시 포착대상 입경을 0.15mm로 설정하여 침사지 규모를 결정하였으나 침사지 유출수의 부유물질 농도를 고려하여 인근 하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침사지 설계시 사업대상지의 토사를 대상으로 입도분석을 수행하고 유출토사의 80% 이상을 포착(제거)하여 침사지 유출수의 부유물질 농도가 25mg/L 이하가 되도록 침사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침사지 설계시 체분석시험 결과에 따라 유출토사의 80% 이상을 포착·제거 할수 있도록 침사지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유출수의 부유물질 농도가 25mg/L 이하가 되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2. 수 질	<p>다. 터널폐수 처리계획</p> <p>○ 터널 방류수의 목표수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시설의 ‘청정’ 지역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배출량이 많아 수용하천의 영향이 예상되며 목표수질로는 재이용이나 방류시 수질기준으로 부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방류수의 목표수질 설정시 수질항목을 pH, T-N, T-P, n-H(광유)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수용하천의 영향과 재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방류수 목표수질 농도를 강화하는 터널폐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함</p>	<p>○ [반영] 터널폐수 방류수의 목표수질 설정시 수질항목을 pH, T-N, T-P, n-H(광유) 등을 추가하였으며, 수용하천의 영향과 재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방류수 목표수질 농도를 “청정” 지역보다 더 강화하여 제시함</p>	
	<p>라.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은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비용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p> <p>○ 노면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바 성토구간, 절토구간, 교량구간, 영업소 등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p>	<p>○ [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환경영향평가지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2013. 7.13, 환경부」에 의거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비용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 제시함</p> <p>○ [반영] 절·성토구간 및 교량구간 등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p>	
	<p>○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으로 대부분 장치형을 제시하였으나 LID 기법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 「환경영향평가지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2013. 7.13, 환경부」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형 시설(식생수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p>마. 터널 및 지하차도 침수대책</p> <p>○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의 내수침수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사업노선 대부분이 도심을 통과하는 터널 및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어 이들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및 지하차도의 내수배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p>	<p>○ [반영] 지하차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도로설계편람에서 명시된 5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하였음</p> <p>-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터널입구부 및 터널내 지점에 배수펌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p>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p> <p>○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주기를 반기 1회로 제시하였으나 유량과 수질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사업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측정·분석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반영]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는 분기1회로 계획하였음</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2. 수 질	-공사시와 운영시 수질조사 항목으로 pH, BOD, COD, SS, T-N, T-P, n-H(광유) 등의 조사·분석	○ [반영]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시 해당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함	
	-터널설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부 하천 및 약수터 등을 사전 조사·분석된 지하수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공사시와 운영시의 지하수위를 반기 1회 이상 조사·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반영]터널설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고강터널 중심부에 지하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공사시와 운영시 지하수위를 반기 1회 이상 조사·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3. 토지환경분야	<p>□ 토지이용</p> <p>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p> <p>○ 계획노선 주변으로 광명시흥지구, 소사지구 등이 개발·계획중에 있어 본 도로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본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개발·계획중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와 본 도로와의 연계성을 도면화하고 각각의 개발사업의 지반고와 계획고 등을 명시하여야 함</p> <p>※ 광명시흥보금자리택지지구와 관련된 본 계획노선이 평가서 36쪽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록에 있는 비교노선에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p>○ [반영]사업노선과 인접하여 개발·계획중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와 본 도로와의 연계성을 도면화하고 각각의 개발사업의 지반고와 계획고 등을 제시함</p> <p>※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p>	
	<p>나. 터널계획</p> <p>○ 사업지구내 설치되는 터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적 적정성이나 훼손여부 등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계획노선에 입지하는 터널에 대해서 시·종점부에 대한 절토현황 및 식생훼손 면적, 경관영향 등을 명시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터널 시·종점부 및 갱문형식 등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p>	<p>○ [반영]터널 시종점부 절토현황 및 식생훼손면적, 경관영향 등을 제시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갱문형식을 선정하여 제시함</p>	
	<p>다. 생활권 단절 대책</p> <p>○ 계획노선으로 인해 지역간 연결로, 마을-농경지간 연결로 등에 단절이 예상되고 접근성 악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절이 예상되는 주요 마을 및 가옥의 현황을 조사하고, 연결교량 및 통로박스 등 생활권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통로박스 설치 기준 명시)하고 도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p>	<p>○ [반영]지역간 연결, 마을-농경지간 단절 해소를 위해 부체도로, 통로박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3. 토지 환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로박스를 신설(264쪽)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빈번하거나 마을 인접지역을 횡단하는 10m 이상의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개방도를 고려하여 규격을 증대하고 조명설치 등의 계획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통로암거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li> </ul>	
	<p>□ 토양</p> <p>가.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공장, 가옥, 축사(258쪽) 등에 대해서는 조사 지점이 없어 사업지구내 토양현황을 파악하기 부적절하므로 추가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li> <li>-주유소(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과거 토양오염검사 기록(누출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을 명시하고 필요시 '토양정밀조사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0-104호)에 명시된 조사를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철거예정 지장물인 공장, 가옥, 축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에 해당되는 시설인 경우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1-138호)에 명시된 기초조사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지점 수와 위치를 결정하여 토양현황을 조사하여야 함</li> <li>-축사 주변 토양은 과도한 함량의 질소, 인,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수에 의해 분산되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사 주변의 토양현황을 조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반영]본 사업노선의 공장지장물 중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추가로 토양환경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추후 철거전 취급·보관 물질을 확인하고 토양오염유발가능성 검토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개연성조사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저감대책을 수립 할 것임</li> <li>○[반영]사업노선내 축사 지장물에 대한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li> </ul>	
	<p>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저감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 가옥, 주유소, 축사 등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을 예측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구 범위, 정화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지장물 철거 예정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시 발견 될 경우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범위 선정하여 정화 및 검증의 과정을 실시 할 계획임</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3. 토지 환경분야	<p>□ 지형·지질</p> <p>가. 지형분석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주변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노선 주변으로 지형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 주변 지형의 산수계 현황과 표고경사 분석 등을 통해 지형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함</li> </ul>	
	<p>나. 산지 및 능선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능선축을 형성하는 산림녹지의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계획노선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의 통과로 산지 및 능선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산경도에 표시된 주요 산줄기 이외 지역의 산림녹지를 형성하는 능선현황을 상세지형도 및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li> <li>※개발밀도가 높은 수도권 특성상 산림녹지를 형성하는 개별산지 또는 산줄기는 보전 가치가 높으며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대규모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산경도 및 위성사진을 통해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산림 능선축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훼손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함</li> </ul>	
	<p>다. 지형변화 예측 및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평면도</li> <li>-주변 지형형상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평가서(초안)에 제시된 도면의 경우 크기와 해상도가 작아 판독 애로)</li> <li>· 평면도는 축척 1:10,000 내외의 한 장으로 연결된 도면으로 작성</li> <li>· 주요 절·성토 구간은 횡단면선을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한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작성하고, 주요 절·성토 구간은 횡단면선을 표시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절·성토 사면구간</li> <li>-사업시행시 예상되는 주요 절·성토 구간에 대해 위치, 형상,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표와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함</li> <li>· 주요 사면에 대해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절토고와 사면고를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주요 절·성토구간에 대해 절토고와 성토고가 명시된 횡단면도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구간에서 대규모 성토사면이 발생하는 구간을 명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대규모의 성토 비탈면이 발생하는 구간을 명시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3. 토지 환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30m 이상의 대절토 사면이 예상되는 구간 &lt;319쪽, 3개소(4,6,11구간)&gt;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li>※특히 STA 6+440~7+110 구간의 대절토사면(61.7m) 지역의 저감대책으로 옹벽구조물을 적용하였으나 절토사면 조망에 따른 경관영향,이용자의 위화감, 사면의 불안정 등의 영향이 예상되어 노선조정 또는 편측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편측터널 설치시 절토사면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30m 이상의 대절토 비탈면에 대해 개착터널 및 옹벽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공법 등을 수립하여 제시함</li> <li>※6+820~6+980 구간에는 복개터널로 계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 및 개착터널</li> <li>-터널 입출구부에 대해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 지형을 포함하는 도면을 작성하고 과도한 지형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측면과 배면에서의 절·성토 사면 발생현황을 예측하여 도면으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터널 갱구부의 절·성토 비탈면 발생현황을 평면도 및 종단면도로 작성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착터널이 계획된 경우 사면발생 현황 및 복토 후 지형형상 등을 상세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함</li> <li>· 터널연장, 제원 등을 명시</li> <li>· 주변지형과 유사한 표고를 가질 수 있도록 복토계획을 수립</li> <li>· 까치울터널(L:100m)에 대해 주변에 사면 발생여부 및 개착식터널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개착터널 계획시 터널연장, 제원 등을 표로 명시하고, 상세도면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소</li> <li>-영업소가 계획된 지역에 대해 지형변화를 예측하고 평면도와 주요 사면에 대해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영업소가 계획된 지역의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3. 토지 환경분야	<p>라. 터널로 인한 영향예측과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중 터널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터널구간의 지반상태, 터널 상부의 자연환경 상태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야 함</li> <li>- 지반상태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지표지질 조사 등을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터널계획된 구간에 대해 지반조사 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 상부는 습지, 천연샘과 인공샘, 자연하천 등의 현황을 정밀히 조사</li> <li>- 터널 예정지역에 분포하는 지하구조물(도수터널, 벙커, 석유비축시설, 지하철 등)의 현황을 정확히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지반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직갱 설치여부 명확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수직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설치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li> <li>- 지하수 유출에 의한 자연환경상의 영향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지하수의 유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li> <li>- 지하수 영향예측을 실시(지하수 영향의 범위, 지하수위 하강의 정도, 회복율, 회복기간 등에 대하여 모델링 등을 통하여 예측)</li> <li>- 지하수 영향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터널폐수 발생량 일지를 참조하여 유출량을 일별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를 조사)</li> <li>- 지하수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터널설치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마. 부수적 지형개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용 진입도로, 현장사무소, 부체도로 등이 필요한 경우 현황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작업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필요시 저감대책을 작성하여야 함</li> <li>- 지형개변 지역중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복구방안이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용진입도로, 현장사무실, 부체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4. 동·식물상	<p>가.생태네트워크 분석 및 육상생물 보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 및 육수생물상의 보전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제시 가능한 교량, 생태터널, 배수관, 통로암거, 측구, 유도펜스 등의 시설물들은 사업구간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위치들에 대한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육상 및 육수생물상의 분포 위치와 이동로 등을 감안하여 교량, 통로암거, 측구, 유도펜스 등의 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제시된 저감시설물 및 보전대책은 대상구간의 생태계 영향여부, 대상 생물의 영향정도 및 효과에 대한 분석후 계획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구간과 그 주변에 대한 생태네트워크(Blue-Green Network)와 대상노선으로 인해 영향 및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시설물의 배치, 규모, 수량 등을 확정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사업구간과 그 주변에 대한 생태네트워크(Blue-Green Network)와 대상노선으로 인해 영향 및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대상구간 및 그 주변(각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의 생태네트워크 분석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각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함</li> </ul>	
	<p>-생태네트워크 분석시 아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구간 주변의 구체적인 생태네트워크 현황</li> <li>· 사업구간 주변 주요 생물군 및 주요 서식지 현황</li> <li>· 도로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단절 및 영향정도</li> <li>· 도로공사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 및 서식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해당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함</li> </ul>	
	<p>-분석된 생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을 중첩 표시하여 생태적 단절 및 영향정도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생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을 중첩하여 영향정도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함</li> </ul>	
	<p>-생태네트워크 분석 후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공사구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생태네트워크 분석 후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공사구간을 제시함</li> </ul>	
	<p>-각 저감시설물의 경우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 생물군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각 저감시설의 경우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 생물군을 제시함</li> </ul>	
	<p>-대상 생물군의 분석 이후 각 저감시설물(교량, 생태터널, 배수관, 통·수로암거, 측구, 유도펜스 등)의 위치, 규모, 수량을 결정하여 도면에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저감시설의 위치, 규모, 수량을 도면에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4. 동·식물상	<p>나. 주요 종 및 서식지 정밀 모니터링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논습지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여부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영향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 등 주요 종(특히 양서·파충류 등)에 대해서는 각 종별 영향과 보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서식 및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에 대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 모니터링시 대상 법적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하여야 함</li> <li>- 각 대상 법적보호종, 주요 생물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하여 생활사를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li> <li>- 정밀 모니터링시 조사기간, 조사지점, 조사경로를 결과에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서식 및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에 대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다. 동·식물상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li> <li>-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조사시 수생태계 평가는 홍수 등에 의한 교란이 적은 봄철에도 조사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하천의 전반적인 수생태계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li> <li>- 군집지수 분석은 정량자료로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시된 출현종 목록은 정성조사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와 결과 분석이 생태계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생태계 평가 및 추후 비교 등을 위하여 ESB(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및 KSI지수 등을 활용하여 수생태계 평가 제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추가 현장조사(2013년 7월, 2014년 3월)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업노선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4. 동·식물상	<p>○육상곤충 조사</p> <p>-육상곤충 조사는 가을에만 실시하여 다양한 종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봄, 여름철, 주·야간 조사결과 보완 및 최근 조사결과와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반영]추가조사(2013년 7월, 2014년 4월)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하였음</p>	
	<p>라. 훼손수목 재활용 방안</p> <p>○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에 대한 이식대상 선정시 높은 고사율로 인한 가이식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존율을 고려, 중·소형목의 입목에 적용하고, 주변 사유지 소유주 이식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p>	<p>○[반영]이식 수종은 가능한 한 본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과 잠재자연식생의 구성종 가운데 이식이 용이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크기의 수목(중·소형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이식 및 이식예정장소를 선정하여 도면에 제시함</p>	
	<p>-훼손수목량에 비해 이식수목량(약 2.3%)이 적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목훼손이 과도하므로 재활용율을 높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식수목 가이식 계획</li> <li>· 가이식 및 이식예정지역이 선정된 경우 도면에 해당지역 제시</li> <li>· 수목관리계획 수립</li> </ul>	<p>○[반영]이식수목은 자연수종을 대상으로 훼손수목의 10%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약 1,111주의 이식을 계획함(초안: 776주-)본안: 1,111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식계획 및 수목관리계획을 제시함</li> <li>· 가이식 및 이식예정지역을 선정하여 도면에 해당지역을 제시함</li> <li>·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li> </ul>	
5. 친환경적 자원순환	<p>가.지장물 철거시의 유해성 폐기물 처리계획</p> <p>○사업지구내에 다량의 철거 지장물이 분포하고 있음. 지장물 철거시 유해물질(석면, 수은, 변압기 내의 PCB 등)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발생시의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유해성 폐기물의 유형별 처리계획 수립</p>	<p>○[반영]지장물 철거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폐기물 유형별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가.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과 인근 교육시설 등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가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항타시 포함)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3~6m 높이의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작업시간 단축, 저소음형 장비사용 등을 통하여 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나, 학교 등 정온시설의 특성상 소음영향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기에는 저감수단이 미미하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특히 저감대책으로 저소음형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저감수단이 너무 미흡하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공사시 건설소음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이동식 방음벽)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6. 소음·진동	<p>나. 발파시 소음·진동 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 발파시에는 터널 입·출구부에 방음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특히 축사 등에 대해서는 가축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최소한 소음 60dB(A) 이하, 진동 57dB(V) 이하, 진동속도 0.2kine(시설물) 이하, 0.09kine(축사)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 발파시에는 터널 입·출구부에 방음문을 설치토록 하며,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파시에는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하며,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음·진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설계를 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발파설계는 발파전문기술사가 수행하여 소음진동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토록 계획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6. 소음·진동	<p>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소음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및 운영시 교육시설(송정중교, 공항초교, 송화초교, 세민정보고, 강서공고 등)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창호개방시 교사내 소음기준을 55dB(A) 이하로 적용하고 현실성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공사시 및 운영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창호개방시 교사내 소음기준을 55dB(A) 이하로 적용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까치울전원단지에서 조망되는 계획노선 구간은 방음дук(식재)을 설치하여 조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방음дук(차폐식재)을 설치하여 조망이 되지 않게 계획함</li> </ul>	
	<p>라. 운영시 소음·진동 저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음 포장도로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음포장재의 재질, 성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li>-저소음 포장도로는 이물질에 의한 공극의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 진공청소 차량 등에 의한 관리계획(소음저감 효과의 유효기간 및 구체적인 포장도로 관리방안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저소음 포장재 제원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감쇠기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감대책으로 소음감쇠기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근거가 미약한 저감수단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터널,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포장재 시공계획을 수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예측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층 정온시설에 대하여 운영시 저감방안 수립 전·후의 수직 등음선도를 제시하고 고층 정온시설의 형상 및 배치, 소음원과 고층 정온시설 사이의 특성(지형, 소음저감시설, 기존 시설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측방법(3차원 소음예측모델 등)을 적용하고 회절감쇠에 따른 소음전파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적용된 예측방법에 대한 예측소음도 및 실측소음도의 비교·검토</li> <li>-계획노선 주변의 개발계획(광명시흥택지지구 등)을 고려한 도로 교통소음도를 예측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교통소음 예측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3차원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별 예측을 실시하고 등소음도를 제시토록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측소음도와 실측소음도를 비교·검토하도록 계획함</li> <li>○[반영]주변 개발계획 고려한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6. 소음·진동	<p>마. 사후환경영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노선에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요 부지경계부 또는 주거지 등에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공사시 사업노선 부근 주요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설치부에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제1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사업노선 최단거리와 정온시설 중심부를 연장하는 선과 가설방음판넬이 설치되는 부분의 접점 상단부 1m에서 공사장 내부로 0.5m 지점에 공사장 내부를 지향하도록 설치하고, 제2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정온시설의 외부(창문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한 지점) 또는 정온시설의 전면부에 설치하여 전광판으로 표시하여야 함</li> <li>-전광판에는 각각 두 개의 마이크로폰의 소음도를 현황소음도로 동시에 표시토록 하여야 함</li> <li>-공사장 및 주변의 교통소음 등 배경소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 전광판에 표기된 소음도가 공사시 소음인지 배경소음(BGN)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소음자동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시(항타 포함), 발파시, 운영시로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종별/시기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7. 위락·경관	<p>가. 경관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p> <p>○ 계획노선 주변에는 다수의 마을, 시가화 지역, 구릉지 등 다수의 경관영향 요인 및 대상이 분포하고 있음. 평가서(초안)의 예시도로는 본 계획노선으로 인한 실제적인 경관영향을 검토하기 어려움. 따라서 아래의 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조망점을 선정하여 스케일과 현실감을 고려한 경관영향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 [반영]추가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p>	
	<p>-조망점 선정시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근경, 중경, 원경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며, 노선계획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 변경 전·후의 예측 필요</p>	<p>○ [반영]근·중경역에서의 조망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시함</p>	
	<p>-계획노선의 대규모 절·성토 발생구간(319쪽)에 대한 경관훼손과 조망의 차단(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루는 법면 안정화 및 자생종을 이용한 식재 대안 필요)</p>	<p>○ [반영]절·성토 발생구간에 대한 법면 안정화 및 자생화, 관·교목을 이용한 식재 대안을 수립하여 제시함</p>	
	<p>-남부수자원생태공원, 까치울 전원단지 등 주요 조망점에서 절·성토로 인한 영향</p> <p>-터널, 교량 등 도로 시설물로 인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p> <p>-절토 및 성토구간에 대한 옹벽 설치시 옹벽으로 인한 영향</p>	<p>○ [반영]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7. 위락·경관	-조망점과 절·성토사면의 이격거리, 조망되는 사면의 규모와 조망각 명시	○ [반영]주요 조망점과 절·성토 비탈면과의 이격거리 및 조망각을 제시함	
	-경관영향 최소화를 위한 터널 갭문과 영업소 등 구조물 입지 및 규모 변경 검토	○ [반영]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계획노선 중 광명시흥보금자리택지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녹지를 횡단(36쪽)하면서 15m 정도의 성토가 다수의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녹지지역에 대한 경관훼손이 예상됨. 성토로 인한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토고를 최소화하거나 교량의 설치, 도로 사면부의 생태복원녹화, 도로경계부에 쌈지공원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반영]사업노선내 성토부에 대한 조망점에서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광명시흥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취소	
	나.옹벽계획 ○ 계획노선 중에서 대절토사면을 줄이기 위해서 10-20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바 옹벽설치 구간을 계획노선에 표시하고 옹벽설치로 인한 영향을 주변의 주거지와 도로, 계획노선 이용자의 관점에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옹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옹벽높이의 최소화, 식생옹벽, 옹벽소단에 대한 조경계획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반영]옹벽설치 구간을 노선에 표기하고 경관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8.사회·경제환경 분야	가.졸음쉼터 설치계획 수립·시행 ○ 휴게소간 거리가 먼 구간에서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휴식공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졸음쉼터 개념의 간이 휴게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사. 서울시(사업지역 관할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향·풍속자료와 관련하여 평균값 외에 최대, 최소값 및 계절별 상풍향(prevaling wind) 값을 제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풍향·풍속자료에 대해 최대, 최소값 및 계절별 상풍향값을 제시함</li> </ul>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에서 분석한 현황자료는 2009년에 2차례, 2012년에 1차례 조사한 것으로 최근 현황을 분석하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1계절 이상을 추가 측정하여 현황 파악을 실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현황조사 지점을 추가하여 2013년 4월, 7월, 8월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PM-10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노선 인근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약 10m 이격하여 다수 위치하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수립 바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사업노선 인근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므로 운영시 PM-10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예상 대상지역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영향에 민감한 사업지구 인근의 주요 지역(단독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지역, 학교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별로 최단 이격거리, 가구수, 지형적 차폐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바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사업노선 주변 영향예상지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최단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여부 파악을 위한 단면도 등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및 운영시 배출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sub>2</sub> 배출량 산정시 NO<sub>x</sub>에서 NO<sub>2</sub> 전환율을 40%로 적용하였으나,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100%로 적용하여 산정 바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배출량 산정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TSP에서 PM-10 전환율, NO<sub>x</sub>에서 NO<sub>2</sub> 전환율을 100%로 가정하여 산정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조사 자료의 대기질 영향예측시 적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및 운영시 첨두시 영향예측의 현황자료는 시간별 측정 자료 중 최대값을 현황으로 사용 바람</li> <li>※ 시간별 측정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평균자료에 2.5(EPA-454/R-92-019, 4-15쪽)를 곱하여 활용가능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공사시 및 운영시 첨두시 현황자료는 시간별 측정 자료 중 최대값을 사용하였으며, 필요시 평균자료에 2.5를 곱한 값을 적용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li> <li>- 계획노선 공사시 PM-10의 경우 24시간, 연평균, NO<sub>2</sub>의 경우 1시간, 24시간, 연평균 가중농도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계획된 저감대책이 적절한지 확인 바람</li> <li>· 토취장, B/P, C/R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li> <li>· 저감방안 수립 후 적용 전과 후에 대한 물질별 영향예측 결과를 비교표로 작성</li> <li>· PM-10 저감을 위한 추가살수 차량 운행 등 구체적인 저감대책 강구</li> <li>- 겨울철 한파시 살수대책을 수립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 공사시 PM-10의 경우 24시간, 연평균, NO<sub>2</sub>의 경우 1시간, 24시간, 연평균 가중농도로 구분하여 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B/P장 및 C/R장을 고려하여 예측함</li> <li>○ [반영]저감방안 수립전·후를 비교표로 작성하여 제시함</li> <li>○ [반영]PM-10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을 수립하여 제시함</li> <li>○ 한파시 접속도로변 살수는 지양하며, 안전요원 배치, 염화칼슘 살포 등 대책을 수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li> <li>- PM-10의 경우 24시간, 연평균, NO<sub>2</sub>의 경우 1시간, 24시간, 연평균 가중농도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계획된 저감대책이 적절한지 확인 바람</li> <li>※ 발생량은 최대교통량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 운영시 각 물질별 침투시 및 일교통량을 구분하여 도로부 및 터널부에서 발생하는 가중농도로 구분하여 예측을 실시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 운영 등 도로 운영시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 주풍향을 설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터널 운영에 따른 예측시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 예측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였으며, 도로 예측시 직각방향의 풍향을 적용하여 예측값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에 대한 환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BAT을 발휘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전과 후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비교·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터널내 환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예측 전·후를 비교·검토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평가 실시</li> <li>- 계획노선 주변에 계획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누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li> <li>· 누적평가는 본 사업의 배출량과 계획된 개발사업들의 배출량을 함께 입력자료로 적용하여 영향예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본 사업노선에 따른 대기질 예측시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으며, 개발계획 배출량은 함께 입력자료로 적용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li> <li>- 계획노선과 약 10m 이격하여 주거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 주거시설들을 사후환경조사지점으로 추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교육시설 위주로 조사지점을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평가서(초안)에서 선정한 2개 지점은 전체 노선대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과 인접한 주거시설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조사지점으로 추가선정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격거리가 가까운 주거시설을 누락할 경우 사유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정온시설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제시함</li> </ul>	
	<p><b>【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름 냄새 등으로 인한 악취방지 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중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으며, 기름 냄새 등으로 인한 악취방지 방안을 검토 제시함</li> </ul>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음벽 및 교량, 지하차도 지상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내 설치가능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를 검토하여 도입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차도 조명 및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내 사용가능한 LED 조명 구간을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건설사업 사용재료 선정시 저탄소 재료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저탄소재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수질 (수리·수문)	<p><b>【물관리정책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 바람</li> <li>-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을 보도(노면)보다 낮은 저류형 침투지형으로 조성하여 빗물의 자연스러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내 휴게소 및 영업소 주변의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보도(노면)보다 낮은 저류형 침투지형으로 조성하여 빗물의 자연스러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이용, 침투, 저류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시설별 빗물관리 단위대책량을 적용하여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필요 함</p> <p>-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 및 대책량 산정내용을 제시 바람(물관리정책과로 제출)</p> <p>[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시설별 단위 대책량](단위 : m<sup>3</sup>/hr/ha)</p> <table border="1" data-bbox="347 797 775 927"> <thead> <tr> <th rowspan="2">시설구분</th> <th rowspan="2">공공·교육</th> <th rowspan="2">교통·기반</th> <th colspan="2">공원녹지</th> <th colspan="2">민간시설</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대규모</th> <th>소규모</th> <th>대규모</th> <th>소규모</th> </tr> </thead> <tbody> <tr> <td>대책량</td> <td>150</td> <td>100</td> <td>300</td> <td>150</td> <td>150</td> <td>50</td> <td></td> </tr> </tbody> </table> <p>※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2007), 서울특별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 가이드라인(2009) 등 참조</p>	시설구분	공공·교육	교통·기반	공원녹지		민간시설		비고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대책량	150	100	300	150	150	50		<p>○[일부반영]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 계획에 준하는 시설(저류형 침투지형 등) 설치를 계획하여 제시함</p>	
시설구분	공공·교육				교통·기반	공원녹지		민간시설		비고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대책량	150	100	300	150	150	50																	
수질 (수리·수문)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p>	<p>○[반영]가배수로 및 침사지, 오탉방지막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p>																					
	<p>○수질오염 총량관리</p> <p>-2013년 6월 1일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공동주택 등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지역개발 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부하량 산정을 위한 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 바람 (물관리정책과 별도 협의)</p>	<p>○[반영]서울시로부터 2014년 5월 9일 개발부하량 할당을 득함</p>																					
	<p>○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계획노선내에 기 개발되어 사용중인 지하수 관정은 현장조사 후(신고관정 : 자치구 신고대장 활용, 미신고 관정 : 보상물건대장 활용) 지하수법 규정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고, 현황(위치, 개소) 및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고 바람</p>	<p>○[반영]「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에 제시된 원상복구 및 되메움 방법 등을 기준으로 폐공 조치하고 현황 및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자치구에 신고할 계획임</p>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수질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활용시설을 계획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대책 시행 전·후 유출지하수량 및 구체적인 감소대책 공법 제시</li> <li>- 유출지하수 활용시설(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건물 청소 및 화장실 용수, 지하환원 등)</li> </ul> </li> <li>○ 완료후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하천유지용수, 청소용수, 지하환원 등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유출지하수를 낭비(하수관 방류)하지 않도록 계획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유출지하수 및 터널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노면살수용수, 청소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수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li> <li>○ [반영]터널공사시 지하수가 유출되는 시점부에 터널공사 완료시까지 유량계를 설치하여 터널1개소에서 일 지하수가 300톤이상 유출되는 경우 감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li> <li>○ [반영]완료후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분리형 배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지하유출수는 하천유지용수, 청소용수, 지하환원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임</li> </ul>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작업에 의해 대상지의 표토 훼손이 예상되므로 훼손 표토량 산정 및 재활용 방안 등 처리대책을 수립 바람</li> </ul> <p><b>【물관리정책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이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바람</li> </ul> </li> </ul> <p>※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이나 사업장 : 공장, 석유류 판매·저장시설, 세탁소, 고물상, 적환장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매립·복토하여 택지 조성지역, 정비소·세차장·주차장 등의 교통관련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표토량 산정하였으며, 공원 및 조경토 등으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li>○ [반영]사업노선내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고 철거 예정인 지장물 중 공장, 축사 등에 대한 대표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결과를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에 대한 신고 등 적법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3 규정에 의거 정화대책을 제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 및 검증 등을 실시 할 것임</li> </ul>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밀도가 높은 수도권 특성상 산림녹지를 형성하는 개별산지 또는 산줄기는 보전가치가 높으므로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대규모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바람(계획노선 현황을 작성하고 보전방안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이 계획된 지역의 능선축 등을 검토하여 훼손여부를 검토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착에 의한 지하수 유동</li> <li>-계획노선은 지하차도 및 다수의 터널을 계획하고 있어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이 예상되므로 지하수 영향예측을 수행 바람</li> </ul>	○[반영]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형변화 및 영향예측</li> <li>-도심구간에서 고성토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거나 교량화 등의 방안을 검토 바람</li> </ul>	○[반영]고성토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입·출구부에서 대규모 절토사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지형변화를 최소화 바람</li> </ul>	○[반영]터널 입·출구부의 대절토 비탈면 발생여부를 검토하고 발생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 조사시기는 계절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춘/추계, 하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4차에 걸친 동식물상 조사가 주로 추계와 동계에 이루어짐. 본 사업은 동식물상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황조사 추가 실시 바람</li> </ul>	○[반영]추가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업노선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유류의 로드킬 예방을 위해 침입방지웬스 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방안을 검토 바람</li> </ul>	○[반영]포유류의 이동경로 등을 감안하여 동물이동로 확보 방안(통로박스, 유도울타리 등)을 검토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의 생태축과 연결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바람</li> </ul>	○[반영]사업노선 주변의 생태축과 연결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조경계획 수립시 주변산지(구름산, 서독산 등)의 생태환경 분석을 토대로 기존 식생의 연계,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조성 등 소생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li> </ul>	○[반영]세부 조경계획 수립시 주변산지의 생태환경 분석을 토대로 수종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식생의 연속성유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훼손수목 처리방안</li> <li>-훼손대상 수목중 이식대상 수목 선정시 생육활력도 우수, 환경적응력 양호 수목으로 이식수목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주관적 판단에 흐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수립 바람</li> </ul>	○[반영]구체적인 이식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수목 활용율이 2.29%에 불과하므로 재활용율을 최대한 확보 바람</li> </ul>	○[반영]이식수목은 자연수종을 대상으로 훼손수목의 10%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약 1,111주의 이식을 계획함(초안: 776주-본안: 1,11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식수목 보관 장소를 제시 바람</li> </ul>	○[반영]이식수목보관장소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훼손수목(33,890주)중 상수리나무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목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주변 녹지대 및 휴게공간 조성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li> </ul>	○[반영]훼손수목 중 상수리나무 외에도 신갈나무, 물오리나무 등 자연수종의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 처리시 가급적 자연표토복원이 가능한 공법으로 선정하여 초본 및 목본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자연식물군락 복원을 유도 바람(현재 암반비탈면에 대해서는 기 적용하였으나 토사비탈면에는 미적용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절성토사면은 자연표토복원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식물군락을 복원토록 계획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공간계획 및 식재계획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세부공간계획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동·식물상	<p><b>【자연생태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서울시 보호 동·식물 발견시에는 보호종 및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보호종 및 서식처 훼손예방</li> <li>-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야생생물 서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야간작업 금지</li> </ul> </li> </ul> <p>※ 서울시 보호종(49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1 1113 475 1135">분 류</th> <th data-bbox="475 1113 804 1135">생 물 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1135 475 1193">포유류 (5)</td> <td data-bbox="475 1135 804 1193">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td> </tr> <tr> <td data-bbox="331 1193 475 1400">조류 (11)</td> <td data-bbox="475 1193 804 1400">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꼬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td> </tr> <tr> <td data-bbox="331 1400 475 1458">파충류 (2)</td> <td data-bbox="475 1400 804 1458">줄장지뱀, 실뱀</td> </tr> <tr> <td data-bbox="331 1458 475 1547">양서류 (5)</td> <td data-bbox="475 1458 804 1547">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td> </tr> <tr> <td data-bbox="331 1547 475 1606">어류 (4)</td> <td data-bbox="475 1547 804 1606">황복, 뿔경모치, 걱정이, 강주걱양태</td> </tr> <tr> <td data-bbox="331 1606 475 1753">식물류 (10)</td> <td data-bbox="475 1606 804 1753">서울오가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td> </tr> <tr> <td data-bbox="331 1753 475 1960">곤충류 (12)</td> <td data-bbox="475 1753 804 1960">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리, 물자라, 검정물방개</td> </tr> </tbody> </table>	분 류	생 물 종	포유류 (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류 (11)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꼬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파충류 (2)	줄장지뱀, 실뱀	양서류 (5)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어류 (4)	황복, 뿔경모치, 걱정이, 강주걱양태	식물류 (10)	서울오가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곤충류 (12)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리, 물자라, 검정물방개		
분 류	생 물 종																		
포유류 (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류 (11)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꼬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파충류 (2)	줄장지뱀, 실뱀																		
양서류 (5)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어류 (4)	황복, 뿔경모치, 걱정이, 강주걱양태																		
식물류 (10)	서울오가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곤충류 (12)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리, 물자라, 검정물방개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li> <li>-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li> <li>-안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안허가 등의 내용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자연생태과, 2133-2151)로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승인일(안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겠음</li> </ul>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li> <li>-휴게소 발생원단위를 지자체 발생원단위의 10%로 산정하였으나, “제3차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다중이용시설 중 도로공사의 통계를 활용하여 수정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운영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원단위는 제3차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다중이용시설 중 도로공사의 통계를 활용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예측 및 제시함</li> </ul>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정온시설 현황</li> <li>-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에 사진을 첨부하고, 좌표를 명시하여 현황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좌표를 명시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점음원 거리감쇠식에 따라 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나, 주변 건물이나 지형적인 조건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변 건물이나 지형조건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정온시설에 미치는 총별 소음분포와 수평분포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 바람(소음원의 발생위치나 사용한 프로그램 등 특성 병기)</li> <li>○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방안</li> <li>-주변 건물이나 지형적인 조건, 방음벽의 설치조건(설치위치, 높이, 길이, 차음량 등) 등 소음도와 관련 있는 조건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상용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주요 정온시설에 미치는 총별 소음분포와 수평분포를 분석 제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소음예측시 3차원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총별 소음분포와 수평분포를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이나 설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 작업시간 조정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가설방음벽의 높이 증가나 이동형 방음벽의 적용 등을 검토하여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대책을 수립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공사시 건설소음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이동식 방음벽)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소음·진동	-축사의 경우 저감목표 60dB(A)를 초과하므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반영]초안시 설정된 축사는 편입용지로 계획되어 정온시설에서 제외함	
	-사용할 저소음형 장비 종류를 제시 바람	○ [반영]저소음형장비 사용계획 없음	
	-저소음·저진동 향타공법과 직접 기초구간 굴착방법, 발파공법에 대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 분석을 실시 바람	○ [반영]향타/발파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제시함	
	○ 향타시 저감방안 -계획노선 부근 정온시설의 층별 예측소음도 산출시 향타시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기준초과시에는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반영]공사시(향타시 포함)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기준초과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교육시설에 대한 소음 저감방안 -공사시 및 운영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창호개방시 교사내 소음을 55dB(A) 이하로 저감 바람	○ [반영]공사시 및 운영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창호개방시 교사내 소음을 55dB(A) 이하로 저감토록 계획함	
	-4~5m 높이의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작업시간 단축(1일 3hr이하)을 통하여 기준을 만족한다고는 하나,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반영]공사시 건설소음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이동식 방음벽)을 수립하여 제시함	
	○ 발파시 저감방안 -소음 규제기준이 75dB(A)이긴 하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도록 소음관리 목표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반영]발파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발파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진동속도 0.2kine 이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반영]발파영향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목표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발파에 의해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파지역의 주요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전에 균열 등 건물상태를 조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 바람	○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파공사전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균열 등 건물상태를 조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운영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방음벽 설치효과를 상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층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분석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바람(방음벽, 방음터널 단부회절에 의한 소음영향분석 포함)	○ [반영]소음예측시 3차원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층별 소음분포와 수평분포를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소음 진동	-소음감쇠기의 종류와 종류별 객관적인 저감효과 시험성적서를 첨부 바람	○ [반영]소음감쇠기 설치계획 없음	
	-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시설은 3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시에는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소음감쇠기 저감효과는 일률적으로 3dB(A)로 적용할 수 없으며, 방음벽과 같이 높이 및 폭에 의한 음향회절에 의한 저감효과임	○ [반영]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시설은 3m이상으로 설치토록 하며, 기준 초과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하여 제시함 ※소음감쇠기 설치계획 없음	
	○ 운영시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수립 -저소음포장도로는 이물질에 의한 공극의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 청소차량 등에 의한 관리계획(소음저감 효과의 유효기간 및 구체적인 포장도로 관리방안 포함)을 수립 바람	○ [반영]저소음 포장도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사업지구에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운영시 사업지구에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발생원과 정온시설간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모니터링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소음자동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검토를 하였으나, 허용기준치내 소음진동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노출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시간대 조정, 무소음, 무진동 굴착공법 선정이 필요하며, 특히 시간대 조정은 공사시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시방기준,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반영 바람	○ [반영]터널 공사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파시간의 조정 및 필요구간에 대하여 기계굴착을 반영하였으며, 시방서 및 보고서에 명기토록 계획함	
	○ 지상통과부는 공사완료후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경관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 바람	○ [반영]방음벽 설치시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방음벽 재질 선정 등)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p>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변화에 대한 예측은 실제 존재하는 조망점에서의 조망범위를 고려한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로 조성 후 이용시 발생하는 가장 실질적인 경관변화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절성도와 도로 노출구간에 대한 주변과 도로이용에 따른 가시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공사로 인한 자연경관영향 및 사면가시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역과 지점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li> <li>○ 고속도로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관련 시설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검토, 사면 규모의 적정성, 주변 자연식생과의 조화로운 식재계획 등 규모와 형태, 소재에 대한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에 맞는 구체적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경관영향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사업노선이 가시될 것으로 보이는 조망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영업소 및 휴게소 등의 건축물의 규모에 합리적이고, 주변 자연식생과 연계한 조화로운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기타의견</p> <p><b>【도로계획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에 대해 강서구 및 양천구와 지역주민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양산 등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강서구 방화대로 통과구간을 전면지하화 하여 한강 하저로 통과하거나 노선을 강서구(서울시) 외곽으로 우회하고, 양천구 관내 신정로에서 접근토록 계획중인 동부천IC를 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신월로축)에 설치하거나 동부천IC 신설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 바람</li> <li>○ 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자산 등 자연생태환경분야와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분야에 대하여 면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 바람</li> </ul> <p><b>【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 공사전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후 적정 방지대책을 강구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자연생태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에 대하여 면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해당 절차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함</li> </ul>	

아. 경기도(사업지역 관할기관)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주거환경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본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2차적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 발생시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토록 계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파로 인한 굴착은 지반진동 및 소음과 같은 발파공해적 요소가 수반됨으로써 주위 환경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저감대책 수립·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발파공사에 의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굴착으로 인한 주변 이용관정 등 지하수위에 영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지하수 영향 예측결과 지하수위 저하가 미미하여, 지반침하 등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보호야생동·식물이 지정고시(제2012-135호, 2012.05.22)된 바, 사업지구내 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추가조사를 통해 경기도 지정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p><b>【기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서 협의내용 결과를 통보받은 후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시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생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산정을 위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함</li> </ul>	

## 2.2 지역주민의견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광명시	홍성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JCT 인근 가옥에 대한 소음 진동, 대기질, 경관, 식생, 용수 공급 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 우회 등의 재검토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주민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T/F등을 통해 현재 설계협의 완료함</li> </ul>	
부천시	남극현 외 7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동산 훼손, 환경오염 피해 가중,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가 있어, 동부천IC 설치 반대 및 재검토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수도권(도심지)에서 고속도로 IC 설치간격은 3km 이내(도로설계요령 : 2~5km)이나</li> <li>-동부천IC 삭제시 광명IC/JCT에서 고강 IC까지는 15km로 부천시민 등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li> <li>-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하게 신설할 경우, 약대-신월간 광역도로상에 IC설치 요청</li> <li>○ 지상노출구간 인근 지역은 소음, 분진, 매연 등 환경오염이 가중될 뿐 아니라, 주택, 농장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해치게 되므로 터널공사 시행요구</li> <li>○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주거환경 훼손 등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한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하터널로 시공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반영]</li> <li>-동부천IC 접속위치가 변경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겠음</li> </ul>	
	성경희 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임</li> <li>○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한 사업시행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해당 절차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며,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음</li> </ul>	
	한기학 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구로구	박우정 외 21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명~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건설 반대</li> <li>- 현대홈타운 지하 33m으로 통과시 소음진동에 따른 건물안전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현대홈타운 터널통과는 선형계획에 부합하는 최대깊이로 계획하는 등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li> <li>○ [미반영] 지하부분 공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계획</li> </ul>	
양천구	이도열 외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천 IC를 지양산을 통과하지 않고 약대-신월간 도로로 접속변경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반영] 주민이 요구하는 약대-신월 접속시 접속부의 내리막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높고, 영업소와 접속도로 사이의 짧은 연결도로로 교통정체가 예상되며,</li> <li>- 접속 지역이 길주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화물트럭터미널 중차량등 교통량 증가로 정온시설(학교, 병원) 및 고밀도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저하가 예상됨</li> <li>- 또한, 까치울 마을과 근접하여 상대민원이 예상되며, 녹지훼손이 과다함</li> <li>- 반면, 길주로 접속시 부천시, 양천구, 구로구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화물트럭터미널 중차량 통행을 주거지역을 우회하므로 길주로에 접속토록 계획하였음</li> </ul>	
강서구	장화진 외 34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현터널 접속부 소음진동/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치현터널 접속부에 대한 소음진동/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무시한 치현터널 사전공사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치현터널은 서울시 공사구간임</li> <li>- 서울시 소관사업</li> </ul>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강서구 장화진 외 345인	○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 [반영]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적법절차에 의거 공고하여 실시함	
	○ 사업노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누적영향검토 미비	○ [반영]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	
	○ 용약계약 부적절 및 평가준비서심의절차 미이행	○ [반영]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동절기 식생현황조사 부적절	○ [반영]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하였음	
	○ 대기질 현황조사지점 선정 부적절	○ [반영]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함	
	○ 교통소음 예측시 소음환경기준 적용 부적절	○ [반영]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은 도로변 지역으로 분류하여 소음환경기준 도로변 “가” 및 “나” 지역의 기준을 적용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강서구	장화진 외 345인	○ 사업의 추진경위 왜곡	○ [반영]초안 평가서 내용중 환경부 질의응답 자료는 본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미 실시 근거로 제시된 자료로써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의 민간투자사업 질의내용을 인용한 사항임	
		○ 주민설명회 대부분 지역에서 무산	○ [반영]광명시, 구로구는 정상개최 - 양천구는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 부천시, 강서구는 주민방해로 개최가 불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실시함	
		○ 중점평가항목 선정시 인구 및 주거 항목 왜 제외하였는가	○ [반영]인구 및 주거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지 공사시에만 치중, 운영시 내용 소홀	○ [반영]환경영향평가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시간적 범위를 공사시 및 운영시로 설정하여 제시함	
		○ 토지이용현황 중 강서구 자료가 치현터널 접속부와 상이	○ [반영]토지이용편중 현황조사의 토지이용현황은 사업노선이 경유하는 전체구간의 일반적인 토지이용현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통계자료(통계연보, 2011, 각 시·구)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임	
		○ 자연생태환경분야 치현터널 인근지역 평가 미비	○ [반영]강서구는 지역적 특성상 도시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시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가 사업노선 주변 전반에 걸쳐 광역적으로 조사됨 ○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상세한 조사결과를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강서구	장화진 외 345인	○ 사업노선 선정에 대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 [반영]서울시 및 강서구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강서로에서 방화로로 노선을 협의결정함	
		○ 강서로 통과안 검토결과에 대한 문제	○ [반영]강서로의 차로축소(6차로→4차로), 동신아파트 근접통과, 종교시설 및 주거시설 다수철거로 집단민원예상 및 공산유적지 근접통과 노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노선을 변경하였음	
		○ 개화로 통과안 검토결과에 대한 문제	○ [미반영]공항시설(김포세관, 대한항공기내식 공장, 공항터미널 등) 저축으로 공항기능 상실 및 주거밀집지역 통과에 따른 민원, 도로기하구조 불합리 등 개화로 노선통과가 불가능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노선(방화로 통과안)검토 결과에 대한 문제	○ [반영]사업노선의 건설로 방화로의 교통분산효과가 있으며, 방화로 지하통과로 생활권 단절해소 및 치현터널 접속부는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 치현터널 개통을 지연	○ 치현터널은 서울시 공사구간임 -서울시 소관사업	
		○ 치현터널 접속부의 방화로 교통 병목현상에 대한 평가 미비	○ [반영]치현터널 접속부의 교통병목현상 검토결과, 방화로 4차로 중 치현터널 방면의 직진 2개차로는 단속류로서, 치현터널 1개 차로(연속류)로 교통처리토록 계획함	
		○ 군사시설 이전은 고속도로 준공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반영]군사시설 이전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서울시와 국방부간 협의한 사항임	

## 2.3 공청회

### 가. 의견진술자(중복의견 제외)

구분	의견개요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한원상	○부천시 주민만을 위한 공청회를 따로 마련해 달라.	○[미반영]추가요청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겠음	
최진우	○동부천C 주변지역에 대해 너무 개략적으로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생태계 조사와 영향예측 및 대책방안이 미흡함	○[반영]동부천C 주변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양서류(동물상) 조사 내용이 부천시에서 조사한 내용과 상이하는 등 조사 내용이 미흡함	○[반영]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함	
	○동물은 번식기인 춘계가 중요한데 춘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반영]봄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함	
	○훼손수목 산정을 위한 표본조사 지점이 16개 밖에 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	○[반영]표본조사지점을 확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제시함	
	○사업시행으로 인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반영]저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함	
백선기	○부천시는 면적 53km <sup>2</sup> 에 녹지율은 16% 밖에 되지 않아 녹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녹지축을 대량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않됨	○[반영]녹지훼손 최소화를 위해 일부구간은 터널(온수, 고강, 까치울, 신정1·2)로 계획하고, 사면녹화 및 조경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다중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나, 부천시의 식수인 정수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않됨	○[반영]까치울 터널, 신정1·2터널 등을 계획하여 등산로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까치울 정수장에 대한 영예측을 실시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함	
	○교통망 확보보다 녹지축 가치가 부천 시민에게는 큼	○[미반영]지양산 3,955천m <sup>2</sup> 중 편입면적은 91천m <sup>2</sup> 으로 약 2.3%만 편입되어 녹지훼손이 미미하며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편익이 더크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충식	○공사후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반영]터널 운영에 따른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동부천C 3가지 안에 대한 환경영향 및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바람	○[반영]동부천C 3개안에 대한 환경영향 및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함	
	○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한 층별 3D모델링 결과를 제시바람	○[반영]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한 층별 3D모델링 결과를 제시함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및 지반 저하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제시 바람	○[반영]지하수 유동모델링을 통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초안에 대해 의견 제시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음	○[반영]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에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본안에 반영	

구 분	의견개요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황익진	○ 재산권보장은 헌법에도 나와 있음. 현대 홈타운 245세대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 라.	○ [미반영] 사업시행에 따른 피해발생은 관련법 (서울시 지하보상기준 조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지하부분 공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였으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계획	
	○ 사업설계전에 미리 주민과 협의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않됨	○ [반영]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 기관 및 해당 주민과의 협의를 실시하여 사 업을 진행토록 함	
	○ 현대홈타운 아파트 밀 통과 절대 안됨	○ [미반영]현대홈타운 터널통과는 선형계획에 부합하는 최대깊이로 계획하는 등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	
	○ 초안보고서에 “최소화 하겠다.” 라는 것 은 주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임.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함	○ [반영]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주변지역 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분 석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보 상대책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	○ [미반영] 지하부분 공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보상이 필요한 경 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계획	

#### 나. 방청객 의견

구 분	의견개요	반영여부(미반영사항)	비고
시민1	○ 까치울은 부천시의 허파와 같은 곳임. 훼손되어서는 않됨. 시행 하고자 한다면 지하터널로 계획 바람	○ [미반영]동부천IC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 하화 계획 - 부천시구간전체6.4km중 3.4km지하화 - 지하화시 장대터널 통과로 교통사고 취약 - 부천시민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효율 반감 (시내도로우회10km)	
시민2	○ 사업을 시행하겠다면, 사업시행 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 화 해주길 바람.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 [반영]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주변지역 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분 석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시민3	○ 동부천IC 찬성. 다수의 반대의견 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없 었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반영]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 록 함	
시민4	○ 신정3지구(이펜하우스) 사람들도 아파트 건설로 기존 환경을 파괴 하면서 입주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모순임 ○ 환경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함. 인간을 위해 환경을 지키는 것임	○ [반영]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주변지역 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분 석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함	